

예산총칙

제1조 2018년도 예산서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예산(안)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741,304,745	22,239,142
일반회계	684,976,484	20,549,294
특별회계	56,328,261	1,689,848
기타특별회계	10,315,056	309,452
의료보호비	2,294,669	68,840
수질개선	146,552	4,397
주민소득지원	828,730	24,862
기반시설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500,000	15,0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6,233,002	186,990
산업단지조성사업	312,103	9,363
공기업특별회계	46,013,205	1,380,396
상수도사업	20,227,986	606,840
하수도사업	25,785,219	773,556

제2조 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예산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5조 명사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83,604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